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한경협 ESG Bulletin

2026. 11 | 제 31 호

K-ESG 얼라이언스 사무국에서는 회원서비스 강화와 ESG 저변 확대를 위해 한경협 ESG경영자문단이 ESG 핵심 이슈에 대해 콕 집어 설명드리는 'ESG Bulletin'을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경협 더하기창업 기획시리즈 ③

창업자 개인책임, 이제 '어디까지'의 문제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대표

올해 4월, 창업자 개인의 투자금 반환 책임을 인정한 판결 두 건이 대법원에서 잇달아 확정됐다. 신한캐피탈은 건축 플랫폼 어반베이스에 약 5억원을 투자했다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하진우 전 대표 개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자 등을 포함한 부담은 약 13억원이다. 오지큐(OGQ)에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를 전제로 약 90억원을 투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도 인수가 무산되자 신철호 대표에게 상환을 요구했다. 지연손해금을 더한 부담은 120억원 규모로 보도됐다.

두 사건에서 인정된 것은 전통적인 연대보증 책임이 아니었다. '이해관계인'으로 계약에 참여한 대표가 별도로 부담한 주식매수·상환 의무였다. 계약 구조와 사유는 달랐지만, 회사에 들어온 투자금의 회수 부담이 창업자 개인에게 돌아갔다는 점은 같았다.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는 투자업권에 따라 다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이 대표자 등 제3자에게 회사의 의무를 연대해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은 예외다. 반면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지 조항이 없다. 두 사건의 투자는 모두 신기술사업금융 쪽에서 이뤄졌다.

과거 계약과 이후 강화된 보호 규정을 같은 시점에 놓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도 적용 법체계에 따라 창업자 보호가 달라진다는 문제는 남는다. 정상적인 사업 실패의 손실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투자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관돼야 한다.

국회에는 이 공백을 메우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김한규 의원안은 명시적인 연대책임뿐 아니라 개인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이나 회사의 상환 의무를 대신 부담시키는 약정 등 우회적인 책임 부과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9월 간담회에서 창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업 실패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쟁점은 보호의 범위다. 김종민 의원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는 연대책임 제한 대상을 창업 3년 미만 기업으로 한정하고, 중·후기 기업 투자는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을 냈다. 신기술사업금융은 민간 자본 비중이 높고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통로이기도 하므로, 일률적인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창업 3년이 지났다고 대표 개인이 투자손실을 감당할 능력이나 충분한 계약 협상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다.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초기 기업에만 금지 규정을 두면 투자자가 이들을 오히려 피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사업 실패의 위험을 투자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창업자 개인책임을 덜어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지난 9월 금융위 간담회에서는 이사회 참여와 청산 시 우선권 등 회사 차원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가 정보를 확인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회수 과정에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계약을 설계하자는 것이다. 정당한 감시 권한을 보장하되, 일상적인 경영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권리의 범위와 행사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부담을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 연대보증이라는 표현을 지워도 사업 실패를 이유로 대표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게 한다면 문제는 그대로다. 표준계약서에 개인책임의 귀책사유와 범위를 명시하고, 창업자가 계약의 의미를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회수시장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지분 매각이나 전략적 인수 경로가 넓어지면, 투자자도 개인의 상환 약정에 의존할 유인이 줄어든다. 대기업이 전략적 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으로 기술을 검증하고, 협업의 성과를 적정한 가격의 인수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모든 투자손실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업의 가치를 바탕으로 회수할 기회는 늘릴 수 있다. 다만 회수시장의 부진이 개인책임 전가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창업자 보호와 회수시장 개선은 함께 추진할 과제다.

앞으로의 계약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미 개인 채무를 떠안은 창업자의 문제까지 해결되지는 않는다. 중기부도 재도전성공패키지와 재창업자금 지원, 성실경영평가 등을 통해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를 돕고 있다. 올해는 추경으로 재창업 사업화·자금 지원 예산 6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런 노력이 투자계약상 개인 채무로 신용이 제약된 창업자에게도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 성실한 실패와 새 사업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취지를 살리고, 채무조정과 재창업 금융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정책이 현장에서도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과제다.

창업자의 개인책임을 모두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투자자를 속인 행위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의 실패를 이유로 투자손실 전부를 개인의 빚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책임의 기준은 기업의 업력이나 투자기관의 종류가 아니라 창업자의 귀책사유와 계약 위반의 내용이어야 한다. 두 판결은 이미 확정됐다. 다음 사건이 나오기 전에 답을 내야 한다.

Copyright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All Rights Reserved.